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14

2017년 2월 28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1월 10일, 허기회 의원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7년 2월 28일 상정・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허기회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탁 대상 사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함(안 제9조).
   ○ 처리사항의 감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10일 허기회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14호로 발의되

어 2016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그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현황과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1)]

○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공공부분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확대를 막고,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습니다.

[표1] ‘민간위탁’으로 표시된 사업 현황

<1-1. 2017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기준>

(단위: 천원)

민간위탁 사무(사업명)	예산
혁신교육지구 운영	158,366
아태지역 학교리더십 아카데미 지원	70,000
이중언어말하기대회	6,000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서울교원문학발간)	25,000
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	38,000
정화구역및교육환경평가시스템관리용역	61,800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22,347,594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1-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세출) 기준>

(단위: 천원)

민간위탁 사무(사업명)	예산
중등1정자격연수(진로진학상담) 민간위탁합숙연수	6,000
중등교육전문직임용후보자연수 민간위탁합숙연수	16,000
오디세이학교협력기관운영 민간위탁금	335,526
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 민간위탁금	38,000
민주역사체험올레길 민간위탁금	250,000
세계시민교육교원직무연수운영 민간위탁금	20,000
체험중심학생시민교육운영 민간위탁금	170,000
교육지원청마을결합형학교운영 민간위탁금	30,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민간위탁금	158,366
정화구역및교육환경평가시스템관리용역 민간위탁금	61,800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22,347,594

○ 그러나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와 예산서의 민간위탁 사업내역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가 '위탁'과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표시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위탁 사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

○ 예컨대, '캠페인콘텐츠기획 및 제작'(예산서 1,214p, 사업별 설명자료 56p) 사업의 경우도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위탁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서의 목구분은 '210운영비'로 되어 있어[3)] 동 사업이 '위탁' 사업인지, '민간위탁'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순 용역 사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범위를 제도화하는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의 경우에는 목이 '320민간이전'으로 명기되어 있음(예산서 637p).

적, 정의, 적용범위의 총칙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계약의 체결, 책임의 소재 및 지휘·감독 등의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각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검토

○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에서 유래되어 시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성격이 강한바,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4]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도 이러한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분별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무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등’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시설관리 공무원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5]

○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나아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명확한 구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교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5) [별첨] 조례안에 대한 의견요약 참고.

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범위를 안 제14조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88,2017.2.22.).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안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오탈자에 대해서도 [표2]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안 제5조 및 안 제8조 수정사항

원안	수정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생략)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관**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용어를 정비함.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514

제안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Ⅰ. 수정이유

○ 불분명한 용어를 삭제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Ⅱ.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시설관리 등’을 삭제함.

○ 오탈자를 수정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시설관리 등’을 삭제하고 같은 조항호의 ‘행정사무로써’를 ‘행정사무로’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의 ‘제4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기관’을 ‘기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원안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관**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